

신평동행정복지센터 유천3동 제초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평택시 신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유천3동 제초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평택시 신평동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채용기간	담당 업무
유천3동 제초	9명	2026. 9. 16(수) ~ 9. 30(수)	○ 유천3동 법면 제초작업 ○ 구1번국도 도로변 및 관내 인도

※ 채용기간은 예산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음

※ 공휴일은 근무일에서 제외

2. 응시자격요건

1) 공통요건

○ 평택시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으며, 채용된 사람이라도 당연퇴직 조치한다.

-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⑦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⑧ 평택시 공무원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험에 부정행 방법으로 응시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⑨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평택시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
- ⑩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그 밖의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2) 채용분야별 응시 자격

채용분야	응시 자격요건
유천3동 제초	- 근면·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로 해당업무 수행이 가능한자 - 공고일 기준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3. 채용방법

○ 전형일정

전형일정	일 시	비 고
모집공고	2026. 9. 7.(월) ~ 9. 14.(월)	○ 평택시청 홈페이지(https://www.pyeongtaek.go.kr) ○ 신평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접수기간	2026. 9. 7.(월) ~ 9. 14.(월)	○ 제출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시 간 : 근무시간 내 (09시~18시) ○ 접 수 : 신평동 행정복지센터 1층 행정민원팀 기간제 근로자 담당자 (평택시 평택3로 9) ○ 문의전화 : 031-8024-5672
서류시험	2026. 9. 14.(월)	○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발 - 응시자 결격 사유 확인 시 서류전형에서 제외 ※ 제초작업 사업 참여 경력자 우대
면접시험	2026. 9. 15.(화)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정 ※ 면접시간 및 장소 별도 통보
최종 합격자 발표	2026. 9. 15.(화)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불합격자 : 별도 통지 없음

4.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붙임 제1호 서식
- 이력서 1부. ☞ 붙임 제2호 서식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 붙임 제3호 서식
- 결격사유에 대한 서약서 1부. ☞ 붙임 제4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각 1부(과거주소 포함)
-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경력 증명 증빙 서류 등).

5.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6. 9. 16.(수) ~ 9. 30(수)
 - ※ 예산과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서 근무일자 조정될 수 있음
- 보 수 : 시급 11,610원 (평택시 생활임금조례에 따른 생활임금단가 적용)
 - ※ 4대 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 근무시간 : 09:00~18:00
 - ※ 공휴일은 근무일에서 제외
- 근무지 : 유천3동 법면, 구1번국도 도로변 및 관내 인도

6.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신평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 기간제 근로자 담당자(031-8024-567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접수번호	신평동 행정복지센터 기간제 근로자 응시원서
종 사 업 무	유천3동 제초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위 본인은 2026년도 신평동 행정복지센터 유천3동 제초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모집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이 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소정의 응시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신평동장 귀하	

접수번호	신평동 행정복지센터 기간제 근로자 응시원서 접수증
종 사 업 무	유천3동 제초
신 청 자	
접 수 일 자	

사 진		이 력 서							
		성명	한 글		생년월일				
			한 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학력	기간		학교명		전공(학위)		학위취득일		
근무·봉사경력	기간(년월)		근무·봉사처(부서)			업무내용			
자격사항	취득년월일		자격·면허증			시행처			
병역	군별		계급		복무기간		미필사유		
상훈	일자		종류		사유		포상기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본인은 평택시 신평동행정복지센터 『유천3동 제초』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의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 및 신원확인 검증,
주민 등록상 주소지 확인 등을 위한 본인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평택시 신평동장 귀하

[붙임 4]

결격사유에 대한 서약서

본인은 신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채용예정인 기간제근로자로서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평택시 공무원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험에 부정행 방법으로 응시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평택시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한, 이상과 같이 위 기간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적발 포함)될 때에는 즉시 사용부서의 장에게 보고 할 것이며, 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로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에 따라 신평동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당연 해지되며,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평택시 신평동장 귀하

[붙임 5]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평택시 신평동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